정보공개서

모범형제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2016053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6.06.1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2.11.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146 번길 291, 7 층(곡반정동) 대표번호(가맹사업부와 동일) Tel: 031-226-0080

> > www.mobumtopokki.com



<목 차>

-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 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 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 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 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 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 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l			주 소		
	모범떡볶이1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291, 7층(곡반정동				
ㅁ버쳥제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류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 3		대표팩스번호	
포함성세 	모범형제 개인사업자			김우진	031-226-0080		_
	법인등록번호	7	나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록번호	493-	02-0211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 • 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우진케이티에스	모범떡볶이 1976	2020.04.1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2 길 9, 302 호(삼전동)	김우진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행길	모범떡볶이 1976	2023.06.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6, 4층 (양재동, 동신빌딩)	홍순일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모범떡볶이 1976	_
상 호	모범떡볶이 1976 OO 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SINCE 1976	자세한 내용은 ㅣ-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범떡볶이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_	_	_	54,128	_	_
2022년	13,665	8,244	5,421	125,083	12,873	12,883
2023년	2,991	0	2,991	80,585	-10,629	-10,627

근거자료는 [별첨 1]에 기재합니다.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직위	사업경력					
교민에구	이금	2711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우진	대표	2023.06~현재	대표	대표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엄	상근	비상근	역전ㅜ(8)
2023년 12월 31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모범떡볶이 1976]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 등록일	출원번호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권)	# # # # # # # # # # # # # # # # # # #		4120160034428 4103982390000	김우진	2027.05.30 (2027.05.30)
(상표권)	// 		4120150032449 4103530350000	김우진	2026.03.21 (2026.03.21)
SINCE 1976 [U모범떡볶이 (상표권)	// 		4020200107182 4017579350000	김우진	2031.07.30 (2031.07.3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모범떡볶이1976]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가맹점 오픈일): 2014년 11월 25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4년 11월 11일)

2. [모범떡볶이 1976]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모범떡볶이와 수제돈가스	모범떡볶이 1976	최경희	2014.11~2016.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 길 14(역삼동,세영빌딩 2 층)
㈜우진케이티에스	모범떡볶이 1976	최경희	2017.01~2020.0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2 길 9, 302 호(삼전동)
㈜행길	모범떡볶이 1976	채현	2020.04~2021.05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43(오금동)
㈜행길	모범떡볶이 1976	채현, 홍순일	2021.05~2022.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43(오금동)
㈜행길	모범떡볶이 1976	홍순일	2022.01~2023.05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6, 4 층 (양재동, 동신빌딩)
모범형제	모범떡볶이 1976	김우진	2023.06~현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146 번길 291, 7 층(곡반정동)

3. [모범떡볶이 1976] 업종

영업표지	업종					
모범떡볶이1976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포함특류이1976 -	분식	떡볶이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모범떡볶이 1976]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	021.12.31		:	2022.12.3	1.	2023.12.31			
시역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2	11	1	7	7	_	4	4	-	



서울	5	4	1	3	3	-	3	3	
부산	_	_	_	_	_	-	-	-	_
대구	_	_	_	_	_	-	_	_	_
인천	_	_	_	_	_	-	_	_	_
광주	-	_	1	_	_	ı	I	-	-
대전	-	_	ı	_	_	ı	ı	_	-
울산	-	_	1	_	_	ı	ı	_	-
세종	-	_	1	_	_	ı	ı	_	-
경기	4	4	1	2	2	1	1	-	-
강원	1	1	1	1	1	1	1	1	_
충북	-	_	1	_	_	ı	ı	_	-
충남	-	_	1	_	_	ı	ı	_	-
전북	-	_	ı	-	_	1	1	-	-
전남	-	_	1	_	_	1	1	-	_
경북	2	2	_	1	1	-	_	-	_
경남	-	-	_	_	-	-	-	_	-
제주	_	-	-	_	-	-	-	-	-

*2021~2022 년까지의 자료는 당사가 본 가맹사업을 인수하기 전 가맹본부 (주)행길에서 운영하던 당시의 자료입니다.

5. 바로 전 3년간 [모범떡볶이 1976]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14	2	5	_	_	11
2022	11	1	_	5	-	7
2023	7	0	3	0	0	4

*2021~2022 년까지의 자료는 당사가 본 가맹사업을 인수하기 전 가맹본부 (주)행길에서 운영하던 당시의 자료입니다.

6. [모범떡볶이 1976]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모범떡볶이 1976]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모범떡볶이 1976]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 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VAT미포함)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4		
지역	지역 2023년 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평균 (하한)	비고
	가맹점 수	매출액	면적 3.3 m³당	상한	면적 3.3 m³당	하한	면적 3.3 m 당	
전체	4	161,339	10,298	181,014	11,313	134,623	9,615	3곳 산정
서울	3	해당없음	_	_	_	1	_	5곳 미만
부산	_	_	_	_	_	_	_	_
대구	_	_	_	_	_	_	_	_
인천	_	_	_	_	_	_	_	_
광주	_	_	_	_	_	_	_	_
대전	_	_	_	_	_	_	_	_
울산	_	_	_	_	_	_	_	_
세종	_	_	_	_	_	_	_	_
경기	_	_	_	_	_	-	_	_
강원	1	해당없음	_	_	_	-	_	5곳 미만
충북	_	_	_	_	_	_	_	_
충남	_	_	_	_	_	-	_	_
 전북	_	_	_	_	_	_	_	_
전남	_	_	_	_	_	_	_	_
경북	_	_	_	_	_	_	_	_
경남	_	_	_	_	-	_	_	_
제주	_	_	_	_	_	_	_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부가세증명원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4개가 아닌 실제 32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모범떡볶이 1976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모범떡볶이1976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4	1,118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의 일반 정보

당사는 [모범떡볶이 1976]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바로 전 사업연도에 모범떡볶이1976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VAT미포함)

그ㅂ	٨rl	기간		지출 비용		비고		
구분 수단		기간		합계	가맹분	로부	가맹점	미끄
합계	-	경기도	(비공개)	7,727	경기도 ************************************	(H) 3	? <i>7H)</i> –	-
광고	소계	경기도 ******	(비공개)	7,727	경기도 ************************************	(H) 3	? <i>7H)</i> –	-



			1			ı	
판촉	소계	37/ <u>E</u>	(비공개)	-	-	-	_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KEB하나은행	대표전화(고객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02-1588-1111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KEB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상단 금융상품몰 클릭->가맹금 예치제 클릭->가맹본부 가입현황 클릭-> 예치계좌에 예치대상 가맹금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은행 고객센터 또는 지점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귀하는 또한 KEB하나은행 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본 설명은 통상적인 예치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가맹금 예치방법은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며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모범떡볶이1976]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설비 등의 종류 및 사양, 점포의 구조 및 노후도 등 내·외부 특성,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가맹비, 교육비

구분	금액 (VAT 포함)	지급 기한	비고
가맹비	770 만원	계약	-가입비(가맹비의 10%) -개점 전 정보·자료제공, 개점 전 운영교 육 오픈 지원(가맹비의 90%)
교육비	330 만원		-개점 전 조리/서비스 교육 (1~2 인 기준)

*반환조건: 가맹사업법 제 10 조의 경우에는 일부 반환될 수 있음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으로 반환 안됨

2) 보증금

귀하는 물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체결 시 당사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 (이자제외)이 귀하에게 반환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물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 등 당사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귀하에게 반환됩니다.

구분	금액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200 만원 (VAT없음)	가맹금 미지급, 당사가 공급한 물 품대금 미지급 및 물품 파손, 로열 티, 광고·판촉 분담금, 교육훈련비,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원·부재료 대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 귀하의 계약 이행 및 위반 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VAT 포함)

구분	신규 가맹계약	구분	양수 가맹계약
가맹비	770 만원	개점 활동 지원비	385 만원
교육비	330 만원	교육비	330 만원
보증금 (VAT없음)	200 만원	보증금 (VAT없음)	200 만원
합계	1,300 만원	합계	915 만원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u>.</u>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만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49.5 m'기준 (약 15 평)	면적 3.3 ㎡당 금액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약 5,374	358	-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인테리어	협력업체	2,970	198		_
간판	협력업체	715	해당 없음	당사의 귀책사유가	돌출간판 1ea 포함
의탁자	협력업체	319	해당 없음	지역자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2/4 인용*8ea=32 석 기준
주방집기	협력업체	429	28.6	이후에는	_
주방설비	협력업체	649	43.3	반환될 수 없음	_
초도비품	가맹본부	110	해당 없음		_



초도식자재	협력업체	182	해당 없음		-
POS	협력업체	월 198,000 원	해당 없음		24 개월 할부
별도금액	자체조달 및 가맹본부	철거, 소방, 닥트, 가스설비, 냉난방공사, 전기증설, 외부파사트, 어닝, 화장실, 기타 추가공사, CCTV, 음향기기세트, 온수보일러, 식기세척기, 정제기, 사물함, 테라스 등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점포 실측 후 귀하에게 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점포입지 및 지역, 점포규모, 점포구조, 물가인상, 디자인의 변동,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등의 사유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기 금액 또는 지급대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② 개점을 위한 영업설비/집기(간판, 인테리어, 주방설비, 집기, 초도물품 등 귀하가 가맹점 개점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계/시공/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 ③ 개점을 위한 영업설비/집기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영업설비/집기를 당사의 승인 하에 귀하가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에게 시공 시작3 일 전까지 설계도면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감독하고, 귀하는 시공 매뉴얼 및 도면 점검, 시공 관리감독 등에 대한 기획관리비용으로 3.3 ㎡당 33 만원(VAT 포함)을 시공 시작 전일까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설비 일부를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당사가 귀하와 별도 협의 후 소정의 기획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당사가 정한 표준안에 따라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당사는 귀하의 개점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최소 점포 기준 33 ㎡ 이상	점포계약 최종 의사결정권은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 기준	교육・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특별한 기준 없음
종업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보건증 소지자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모범떡볶이 1976]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카탈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점포규모: 59.4 m²기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 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도-

9)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점포환경개선 시 기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Ⅷ-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가맹본부	월 22만원	매월 말일까지 상호 협의한 방식에 따라 당사에 지급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비용으로 반환되지 않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는 가맹계약 갱신 시 재가맹비 110 만원(VAT 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귀하가 계약기간 동안 당사의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가맹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30 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귀하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 일 이전에 당사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잔여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 3 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 받은 경우에는 제 3 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만료될 경우 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 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간판, 설비, 집기 등에 부착된 영업표지의 변경비용은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분담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계약의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에 개점활동 지원비(385 만원, VAT 포함), 교육비(330 만원, VAT 포함), 보증금(200 만원, VAT 없음)을 납입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 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770 만원, VAT 포함), 교육비(330 만원, VAT 포함), 보증금(200 만원, VAT 없음)을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귀하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 "모범떡볶이 1976"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일부를 당사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메뉴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매장을 가도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충성도, 브랜드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모범떡볶이1976]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 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모범떡볶이 1976]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 당사가 2022 년 [모범떡볶이 1976]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상품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 2] 참조 (메뉴 및 가격)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의 판매

귀하는 당사가 공급한 상품 및 원/부재료를 타 브랜드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기타 자영업자 등 당사와 계약한 귀하의 점포가 아닌 다른 곳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인근 [모범떡볶이 1976] 가맹점사업자의 물품 부족 비상 시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이런 어주 비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떡볶이를 판매하는 업종	모범떡볶이 1976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귀하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300M (다만, 특수상권은 제외)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라 함은 강남역/홍대/명동 등에 준하는 대형상권,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을 의미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 업자와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반포삼겹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모범떡볶이 1976)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고객니즈 반영,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저변 확대,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성에 따라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판매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① [모범떡볶이 1976]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 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고 시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①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예→E, 아니오→A	D-60 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 제 11 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아래 표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당사의 계약 해지 사유

- 1. 제 1 조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2.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① 인/허가 취득 ② 물품의 조달과 관리 ③ 거래상대방에 따른 물품판매의 제한 ④ 메뉴
- 및 판매의 제한 ⑤ 가격결정의 제한 ⑥ 영업시간 및 일수의 제한 ⑦ 유니폼 착용 ⑧ 광고
- 및 판촉 ⑨ 경업금지 ⑩ 상품공급의 중단 ⑪ 로열티의 납입 ⑫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비용
- ⑬ POS 설비·기기·프로그램 설치 및 매출보고
- 3. 제 7 조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4. 제 8 조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5. 제 9 조 "갑"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 6. 제 14 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7. 제 18 조제 2 항 "을"의 요건 변동 시 "갑"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 8. "을"이 "갑" 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9.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 10. 귀하가 계약체결일 또는 점포이전으로 인한 영업중단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귀하가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귀하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나.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다. 귀하가 당사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 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 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 14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 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 조제 1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⑦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⑧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⑨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 개월 전) \rightarrow 양도인 면담 \rightarrow 승인 여부 통지(10 일 이내) \rightarrow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지급) \rightarrow 양수인 교육 \rightarrow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는 귀하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합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양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담보설정, 동업, 전전세, 점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6-1)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V-5-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귀하 및 귀하가 제 3 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V-5-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떡볶이를 판매하는 업종	국내 전 지역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모범떡볶이 1976]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주7일 (설, 추석명 절을 제외한 연중무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부득이하게 연속하여 2일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존 영업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은 후 휴업사실을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점주 자율	직접 근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Quality(메뉴의 표준화)	레시피 준수, 자점매입 여부 확인 등
Service(서비스)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Cleanliness(청결)	주방위생, 매장청소현황 등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광고의 목적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당사는 [모범떡볶이1976]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가맹점모집광고		100%	_	-
광고	개별광고 광고		_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H	브랜드광고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사업자 찬반 통지 -> 찬성 50% 이상의
	전국광고 브랜드광고 + 가맹점모집광고	경우 실시 -> 비용 분담 안내			
판촉	전국	+ 가맹점모집광고 전국 및 지역별판촉		50% (전체 가맹 점에 안분)	판촉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사 업자 찬반 통지 -> 찬성 70% 이 상의 경우 실시 -> 비용 분담 안 내 (단, 70% 이상 미동의시 동의한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 사 실시 가능)
	개별판촉		_	100%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귀하가 자기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당사에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10.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기간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유지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귀하가 당사와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계약을 종료한 후 가맹계약서 제 13 조 1 항 및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사항(영업표지 사용중단 및 철거, 매뉴얼 등의 반환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 일당 [10 만원]의 지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 변심 등 귀하의 귀책사유로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다음의 위약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최초 가맹금을 다음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그 나머지를 귀하에게 반환합니다.

해약요청일자	위약금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 이내	100 만원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한 24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10일 이내	200 만원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점 전까지	300 만원
개점 관련 발생되는 인테리어, 설비공사비용 등	실제 발생비용 전액

- ③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해지 직전 12개월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영업일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최초 오픈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평균 월 매출액)의 10%에 잔여 계약 기간 개월 수(15일 이상 남은 달은 1개월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개월 15일이 남은 잔여 계약기간인 경우 11개월로 계산)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6 조 제 9 항을 위반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가맹계약서 제 2 조의 최초 가맹금, 위반일수에 따른 로열티 및 물류마진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9 조를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귀하가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⑥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6 조 제 2 항 제 1 호(물품의 조달과 관리)를 위반하거나,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을 자점매입하여 상품(메뉴)으로 판매할 경우, 귀하는 위반행위 1 회당당사에 위약벌 [300만원]을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① 당사의 지급요청일에 귀하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당사에게 지급



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귀하는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⑧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①항 내지 제⑥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다른 계약내용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⑨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임원이라 함은, 법인 등기부와 정보공개서에 임원으로 기재된 자를 뜻합니다.
- ⑩ 귀하 또는 귀하의 종업원이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당사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개점절차 및 비용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금액
합계	_	35~45일	
가맹 상담접수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사업설명, 상담	-가맹상담 및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가맹계약체결	-가맹금 예치 안내 -가맹계약체결	2일	기메저시어되어 브드
점포실측 및	-투자비 산출	201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도면미팅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2일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
공사 착수	공사 실시	20일] 1)~4)을 참고하시기 마 - 랍니다.
교육실시	메뉴 및 서비스 교육	교육장 3일	ᆸ이디.
프 ㅋ ㄹ 이	(공사기간 중 실시)	현장 3일	
영업설비/	-냉장고 등 입고	2일	
집기 입고	-그릇 등 입고	22	
초도물품 입고	-홍보물 및 식자재 등 입고	1일	
그랜드 오픈	-영업시작 -판촉 및 홍보이벤트	당일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을 하지 않습	하다.
구분	세부내용
점포환경 개선사유	①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노후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시점은 최근 개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①간판교체비용 ②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①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②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완료 후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 차: 청구일로부터 90 일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1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 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장비·집기 교체비용은 가맹본부에서 비용분담 하지 않음
협의절차	 가맹본부의 권유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점포환경 개선 시행 가맹점사업자의 신청 → 가맹본부의 검토 및 승인(서면 회신) → 점포환경 개선 시행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개선사항 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안내→개선사항 시정	가맹본부 부담 (단,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 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모범떡볶이 1976]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주류 대출	00 주류 (지역에 따라 상이)	500~2,000 만원 (점포입지에 따라 상이)	10~20 개월 분할상환	주류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조건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지원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조기안정화	가맹점오픈시	가맹점 오픈시	가맹계약기간중	온라인,	경영컨설팅
및 운영홍보	조기안정화를	or 가맹점 요	기정계 기신 8 (1 개월 단위)	SNS	제공
지원	위한 홍보지원	청시(상담후)	(I/N글 전치) 	광고홍보	~110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모범떡볶이1976]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및 장소	최소시간	비용	필수여부
신규 교육 (개점 전) 개점	개점 전에 필요한 제반 교육	실습교육 (지정 교육장)	교육장 3일 현장 3일	최초 가맹비에 포함	필수 교육
	개점 전 조리/ 서비스 교육		(점주 협의 하에 변동 될 수 있습니다.)	330만원 (VAT포함)	필수 교육
신메뉴 교육 (개점 후)	메뉴 조리방법	집체교육 or S/V를 통한 개별 교육	메뉴에 따라 상이	실비	신메뉴 개발 시, 필수교육
정기교육 및 부정기 교육	운영방침 및 판매/ 서비스기법 등	집체교육 or S/V를 통한 개별 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실시 1개월 전에 실 비 및 최소시간 공지)	실비	필수 교육

2.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및 훈련은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교육인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①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들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는 당사의 신메뉴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메뉴 교육을 받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을 받지 않거나, 메뉴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신메뉴 교육 외 당사가 실시하는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_	-	_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_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이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_	_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이 없습니다.



[별첨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023-2021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 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도-



[별첨 2. 메뉴 및 가격]

메뉴명	구성	가격
▶떡볶이	롱떡+야채+만두+계란+어묵	
로제떡볶이(가칭)		15,000
오리지널 떡볶이		12,000
차 돌 떡 볶 이		15,000
통오징어떡볶이		15,000
치 즈 함 박 떡 볶 이		15,000
섞 어 떡 볶 이 (3~4인)		30,000
. III E BII L		
▶세트메뉴 로제떡볶이 세트	라면사리+계란찜+튀김어묵+쿨피스	22.000
		22,000
오리지널 떡볶이 세트		19,000
차돌떡볶이 세트		22,000
통오징어떡볶이 세트		22,000
치즈함박떡볶이 세트		22,000
섞어떡볶이 세트		36,000
▶사이드		
모듬사이드A	모범당면(넙적+실)+순대+김말이2	5,500
모듬사이드B	모범소세지(프랑크+줄줄이)+미니핫도그+볶음밥	7,500
모듬사이드C	치킨바삭햇+동글이주먹밥+탄산1	9,500
<u> </u>		7,000
<u> </u>	프랑크+줄줄이	3,000
모범순대		3,000
야 끼 만 두	37#	1,000
모짜렐라치즈		
	27H	3,000
김 말 이	27H	1,000
계란	37H	1,000
미니핫도그	6 2	3,000
튀김어묵	0 =	2,000
버터갈릭 감자튀김		5,000
계란찜		3,000
떡 사 리		2,000
어 묵 사 리		2,000
▶라이스		
등심돈까스		7,000
ㅎద 존 까스 치즈볶음밥		5,000
동글이주먹밥		3,000
볶음밥		2,000
▶면사리		
모범당면	넓적당면5줄+실당면1	2,000
라면사리		1,000
. 0 =		
▶음료 에이드(자유 오레지)		2 000
에이드(자몽,오렌지)		3,000
탄산(콜라,사이다)		2,000
쿨피스(복숭아,자두)	│ -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홈	2,000



서면, 직원이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재 안내할 수 있습니다. [별첨 3. 원·부재료 및 초도상품, 설비·집기류 목록]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 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도-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현황/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가맹본부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반	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수령장소							
스러 하이	아래 빈칸에		개서/인근 습니다."리				서를
수령확인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u>가장 인근에</u>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광역시방시	ㅏ지 난제>
--------	------------------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제 3 자에게 유포하거나 무단 도용 및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인)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현황/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가맹희망자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반	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수령장소							
스러 하이	아래 빈칸에		개서/인근 습니다."리				서를
수령확인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u>가장 인근에</u>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광역	[시망사지	난제 >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제 3 자에게 유포하거나 무단 도용 및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인)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제 1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의 7 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 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